

## 30주년 맞은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“조정을 통한 분쟁해결기능 강화”

- 개인·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사 역할 특출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5. 14.(수) 오전 9시30분, 조선 팰리스 서울 강남(서울 강남구)에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\*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 출범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.

\* 특허·상표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,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,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‘재판상 화해’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기능

### <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출범 30주년 기념해 성과공유 및 포상 등 진행>

이날 기념식은 김완기 특허청장,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, 김용선 한국 지식재산보호원장을 비롯해,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30주년 기념 및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,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조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.

이날 기념식에서는 기술적·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분쟁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조정위원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졌다. 올해의 수상자는 정용기 변리사(특허법인 정안, 상표·디자인 분야), 정해양 변리사(김앤장 법률사무소, 특허 분야), 이지은 변호사(법률사무소 리버티, 법률 분야)로, 최근 3년간의 ▲분쟁조정 실적, ▲분쟁조정제도 발전 기여도, ▲업무 난이도 등을 평가해 최우수 3인이 선정되었다. 또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기은아 변호사(다솔특허법률사무소)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.

### <산업재산권 분쟁조정, 1995년 4건 → 2024년 160건으로 지속 성장>

1995년 출범 첫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건에 불과했으나, 2017년 57건, 2021년 83건에 이어, 2024년에는 160건으로 급증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.

특히, 지난 10년('15~'24년)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활용현황 분석 결과, ▲(활용주체) 개인·중소기업 신청(697건)이 91%로, 상대적으로 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큰 개인·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▲(조정대상) 상표·디자인 사건(491건)이 64%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나, 특허·영업비밀 분쟁(179건)도 23%에 이르러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. ▲(기간) 접수부터 처리까지 평균 79일이 걸려 소송 대비 약 5~8배\*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2  
 \* 최근 5년(' 19~ ' 23년) 1심 평균 처리기간 : 특허 606일, 상표 368일(' 23,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)

▲(성립률)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(62%) 조정이 성립되는 등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지식재산 분쟁은 기술유사성 및 권리 침해여부 판단 등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임에도,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결과, 일반적인 조정제도\* 대비 30%p 이상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였다. [붙임 2  
 \* 민사조정 성립률 30.6%(' 24, 사법연감)

김완기 특허청장은 “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분쟁을 접수하고 해결한 위원회”라고 소개하면서 “특허청은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 대신 분쟁조정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도록,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, 법원·경찰 등 유관기관 조정연계 강화, 온라인 전자조정시스템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주연 (042-481-5213)
		담당자	사무관	임준영 (042-481-822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□ **행사 개요(안)**

-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고, 위원회의 발전 및 조정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
- (일시/장소) '25.5.14.(수), 9:30~16:50 / 조선팰리스 강남(서울 강남구)
- (참석자) 특허청장, 서울중앙지방법원장,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및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 등 80명

□ **프로그램(안)**

시 간	주요내용	
<b>사전환담(4F VIP 라운지)</b>		
09:30~09:40('10)	티타임	■ 주요내빈티타임
<b>제1부 기념식(4F 로얄챔버) : &lt;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30주년 기념식 &gt;</b>		
09:40~09:42('02)	개회	■ 개회 및 행사 일정 안내
09:42~09:45('03)	개회사	■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
09:45~09:55('10)	위촉장수여	■ '25년 조정위원 위촉장 수여
	표창수여	■ '25년 우수 조정위원 표창 수여
	감사패수여	■ 분쟁조정위원회 발전에 대한 감사패 수여
09:55~10:00('05)	기념사	■ 김완기 특허청장
10:00~10:05('05)	축사	■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
10:05~10:10('05)	사진촬영	■ 사진 촬영 및 장내정리
10:10~10:30('20)	발표	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30주년 성과와 향후 과제 - 박주연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
<b>제2부 워크숍(4F 로얄챔버) : &lt;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 워크숍 &gt;</b>		
10:30~12:00('90)	강의1	■ 조정조서 작성 실무 및 예시 - 이규봉 서울중앙지법 판사
12:00~13:00('60)	점심	오찬 및 티타임
13:00~14:30('90)	강의2	■ 조정위원의 역할과 마음가짐 - 최재석 변호사(임대차분쟁조정위 사무국장)
14:30~14:50('20)	휴식	Coffee Break
14:50~16:20('90)	강의3	■ 효과적인 조정절차 진행을 위한 사례 소개 - 김효성 변리사(효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)
16:20~16:50('30)	토론	■ 위원회관련 Q&A

## 붙임 2

#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성과

### □ 최근 10년('15~'24년)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

(단위 : 건)

신청	처리 현황				성립률 (A/(A+B))
	성립(A)	불성립(B)	조정불응	기타 (취하·진행중)	
767	297	183	203	84	62%

### □ 최근 10년('15~'24년) 분쟁조정 기업 규모별 신청 현황

(단위 : 건)

신청인 \ 피신청인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개인	기타	합계
신청	대기업	4	1	4	5	-	<b>14</b>
	중견기업	-	-	9	-	-	<b>9</b>
	중소기업	20	17	545	30	17	<b>629</b>
	개인	18	5	32	5	8	<b>68</b>
	기타*	1	-	45	1	-	<b>47</b>
합계		43	23	635	41	25	<b>767</b>

\* 외국기업·대학·공공연 등

### □ 최근 10년('15~'24년) 분쟁조정 권리별 신청 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	합계
신청	17	47	57	53	45	70	83	76	159	160	<b>767</b>
특허·실용신안	9	8	23	3	7	23	8	11	26	34	<b>152</b>
상표·디자인	8	38	33	38	35	35	41	48	111	104	<b>491</b>
부정경쟁행위	-	-	-	-	-	5	24	4	14	3	<b>50</b>
영업비밀	-	-	-	7	-	2	2	11	1	4	<b>27</b>
직무발명	-	1	1	5	3	5	8	2	7	11	<b>43</b>
기타	-	-	-	-	-	-	-	-	-	4	<b>4</b>

### □ 최근 10년('15~'24년) 분쟁조정 평균 처리 기간

(단위 : 일)

구 분	'15	'16	'17	'18	'19	'20	'21	'22	'23	'24
처리기간	66	34	55	58	55	66	69	62	66	82



“ 특허, 상표, 영업비밀 등의 분쟁은?  
이제 조정으로 해결하세요!  
**산업재산권  
분쟁조정제도** ”



❖ 산업재산권 분쟁제이란?

산업재산권 분쟁에서 소요되는 비용·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[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]에 양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

❖ 신청 분야

- 산업재산권 분쟁 (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)
- 직무발명 관련 분쟁
- 영업비밀 관련 분쟁
-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

❖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장점

- 신속한 분쟁해결 (3개월 이내)
- 간편 절차 신청비용 무료
- 절차 비공개 (비밀 보장)
- 전문가의 원만한 분쟁해결 지원

❖ 신청 자격

- 산업재산권자·실사권자·사용권자
- 직무발명자·영업비밀 보유자
- 부정경쟁행위의 분쟁 당사자
- 권리실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

❖ 신청 방법



홈페이지 [www.kopia.re.kr/adr](http://www.kopia.re.kr/adr)  
우편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
T 1670-9779 F 02-553-5865 E-mail [ip.adr@korea.kr](mailto:ip.adr@korea.kr)

❖ 산업재산권 분쟁제도의 효력

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

